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09

발의연월일: 2021. 7. 14.

발 의 자: 한병도·강민정·김민철

김성주 · 김승원 · 서영교

오영환 • 윤준병 • 이용빈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 MBC)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 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도 제한되어, 토론회 편 성 시간이 제약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음.

이에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7 및 제82조의2).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2항제1호 중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상파방송사(「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2조의2제10항 본문 중 "공영방송사는"을 "지상파방송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공영방송사가"를 "지상파방송사가"로,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7제2항제 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은 이 법 시 행 전에 위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 가 각각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우선하 여 위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	
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	-,
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1
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	
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u>공영방송사(한국방</u>	<u>지상파방송사</u>
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법」 제2조제3호가
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	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이내,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이내의 위원

2. (생략)

③ ~ ⑩ (생 략)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⑨ (생 략)
 - ① <u>공영방송사는</u>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

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u>같다)</u>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상파방송사는

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 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 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u>공영방송사가</u>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u>다른 지상</u> <u>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u> 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 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 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① ~ ⑭ (생 략)

<u>.</u>
①
- <u>지상파방송사가</u>
<u>종합유선방</u>
<u> 송사업자의</u>
② ~ ⑭ (현행과 같음)